

제 10 장 투 자

제 1 절 정 의

제 10.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분쟁투자자라 함은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라 함은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제기당한 당사국을 말한다.

자유태환가능통화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 및 개정사항에 따라 결정한 “자유롭게 태환이 가능한 통화”를 말한다.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서,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¹⁰⁻¹⁾와 같이 투자의 특성을 지닌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¹⁰⁻²⁾

가. 기업

나. 지분·주식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10-1)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는 다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가.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

(1) 일방 당사국 영역의 공민 또는 기업이 타방 당사국 영역의 기업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2) 무역금융과 같은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신용의 제공. 그리고,

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서 내려진 명령

그리고 가호 내지 아호에 규정된 이자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2) 본 장의 목적상, 제10.1조 다호에 기술된 “대부 및 그 밖의 채무 증서”와 바호에 기술된 “계약상 금전적 청구와 이행 청구”는 사업 행위와 관련된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성격의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다. 채권·회사채·대부 및 그 밖의 기업 채무증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 라. 선물·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 마. 완성품인도·건설·경영·생산·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 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상 금전적 청구 및 이행청구
- 사.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 아.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률 및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 자. 그 밖에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임차권·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라 함은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공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이전이라 함은 송금 및 국제적 지불을 말한다.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12월 15일 유엔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 2 절 투 자

제 10.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제10.7조¹⁰⁻³⁾ 및 제10.18조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취득한 투자 뿐만 아니라 발효일 당시의 기존투자에 적용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청구 또는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¹⁰⁻⁴⁾ 또는 보험·사회복지·공교육·공공훈련·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하에서 공급되거나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3) 이 규정은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이행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가 손실을 입을 때에만 적용된다.

10-4) 제10.11조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싱가포르 중앙 장래대비 기금과 같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공공연금 또는 의무적 저축 제도가 “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데에 합의한다.

제 10.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이 불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 영역 안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기탁하도록 하는 일방 당사국의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그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보증에 대한 그 당사국의 대우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12장(금융서비스)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12장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4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서 동 지방정부가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0.5 조 대우의 최저기준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상 최저대우기준에 따른 대우를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의 개념은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추가하여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형사적·민사적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상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나.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 제공을 요구한다.

다.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말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나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 10.6 조 사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를 추구하고 방어함에 있어서 법원 및 행정법원, 그리고 모든 수준의 관할권 안에 있는 기관에의 접근에 대하여, 같은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제 10.7 조 이행 요건

1.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에서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 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떠한 요건도 부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도록 하는 것
-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
-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안의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
- 라. 자국 영역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안의 인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
-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에 또는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하는 것
- 바. 그러한 투자에 의하여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자국 영역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그 수출 또는 외화수익의 양 또는 금액과 연계함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 사. 경쟁법 위반혐의를 시정하거나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법원·행정법원 또는 경쟁당국이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역의 인에게 기술·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독점적 지식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 또는
- 아. 생산하는 상품 또는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한 편익의 수령 또는 계속된 수령에 대하여, 제1항 라호·사호 및 아호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편익의 수령 또는 계속된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생산지를 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력을 훈련시키거나 고용하거나, 특정 설비를 설립하거나 확장하거나,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나호·다호 또는 라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환경적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다. 고갈 가능한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는 당사국이 민간 당사자 간의 약속·의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속·의무 또는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10.8 조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1.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그 위원회의 구성원 다수가 특정 국적을 소지하거나 그 당사국의 거주민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당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9 조

불합치 조치

1. 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부속서 9A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불합치 조치
- 나. 가호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 다.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가호에 규정된 불합치 조치의 개정

2. 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는 부속서 9B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9B의 자국 양허표에 포함된 조치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유효하게 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10.4조 및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정부조달, 또는
- 나.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이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수령의 지속에 부가되는 조건

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후원 하에서 체결되는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0 조 미래의 자유화

1. 당사국이 비당사국과의 협정으로 제10.9조와 합치되게 일정이 잡힌 잔여

제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유화하는 경우,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협정에 부여된 대우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2. 제22.1조에 따른 검토체제를 통하여 양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0.9조제1항 및 제2항과 합치되게 일정이 잡힌 잔여제한의 축소 또는 철폐에 이르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유화에 참여한다.

제 10.11 조

송 금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안으로 또는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금액

나.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지불·경영지도비·기술지도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용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0.13조 및 제10.1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제3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송금이 송금 당시 시장 환율로 자유태환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다.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 대한 재정보고 또는 기록 보존
라. 범죄 또는 형사 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이행 확보

제 10.12 조 긴급제한조치

1. 당사국은, 제2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 국경 간 자본거래에 관련된 제10.4조 또는 제10.11조에 규정된 자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서 규정된 조치는,

- 가.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서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라. 타방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마. 타방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회피하여야 한다.
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 타방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우호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제1항나호에 따라 채택되고 유지되는 조치는 6월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재도입을 통하여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그러한 조치 또는 그 변경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그에 의하여 채택되는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가맹국으로서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0.13 조 수용 및 보상

1. 어느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영역에 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 나. 비차별적 기초 하에서,
- 다. 적법절차 및 제10.6조에 따르며,
- 라.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보상은,

- 가. 지체없이 지불되어야 하며, 완전히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 나. 수용이 발생(“수용일”)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태환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되는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그 통화에 대하여 발생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의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태환될 수 없는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되는 보상은 -지불일에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것- 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가. 수용일의 지배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가능통화로 환산된 당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이에 더하여,
- 나.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그 자유태환가능통화에 대하여 발생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의 이자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토지와 관련된 수용조치는 이 협정의 발

효일 현재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보상의 목적과 보상의 지불에 있어 보상액에 관한 당해 법률과, 후속 개정법률이 토지의 시장가격에 대한 일반적 추세를 따르는 경우 그 개정사항에 따른다.¹⁰⁻⁵⁾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또는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14 조 손실 및 보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 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고 그러한 손실이 전투행위로 인하여 야기되거나 긴급피난에 의하여 요구된 것이 아닌 재산의 징발 또는 파괴로 인한 것일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있어, 타방 당사국이 자신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당해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2.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제10.4조에는 불합치하나 제10.9조제4항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이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독점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부수되는 조건과 관련된 현행조치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15 조 대위변제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타방 당사국 영역에

10-5) 제10,13조는 수용에 관한 서신교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조건으로 한다.

서의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 또는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부여한 경우, 이 계약 또는 재정적 보증에 따라 당해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지불한 때에는, 타방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그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0.11조·제10.13조 및 제10.14조는 권리 및 청구의 그러한 인정에 입각하여 당사국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관에게 지불될 지급액과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 10.16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0.4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투자가 그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합치되어야 하고, 이 장에 따른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2. 제10.4조에 불구하고, 당사국은 오로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자국 영역에 있는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투자자 또는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게 그리고 선의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7 조 혜택의 거부

제19.3조 및 제20.4조에 따른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그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되었으나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0.18 조 환경 조치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활동이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면에서는 이 장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제 10.19 조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조는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이 장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에 적용되며,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동등한 대우와 공정한 법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모두 보장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를 수립한다.

2. 분쟁 당사자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 모색하여야 한다.

3. 분쟁이 협의 및 협상 요청일부터 6월 내에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해결될

수 없고, 당해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제5항에 규정된 잠정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는 제외)에, 또는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분쟁의 해결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투자자는 다음에 그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일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다. 그 밖의 중재기구, 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름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3항가호 및 나호에 따른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분쟁투자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할 것

나. 제3항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제기할 때까지 분쟁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기업이 아닐 것. 그리고

다. 분쟁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한다는 의사와 다음의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제3항가호·나호 또는 다호의 장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장으로 지명. 그리고

(2) 이 장에 따른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을 포함)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5. 어떠한 당사국도 분쟁 투자자가 권리 및 이익 보전을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의 장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의 손해배상과 분쟁 사안의 실질의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 보호 조치를 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6. 만일 타방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여 따르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가 이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하기로 동의하였거나,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는 어떠한 당사국도 외교

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날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2005년 월 일 [장소]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10장(투자)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협정이 발효한 후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투자자의 토지 또는 재산을 수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싱가포르가 협정이 발효한 후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 투자자의 토지 또는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수용된 토지 또는 재산소유물의 토지 획득법에 따라 결정되는 당시의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상은 1995년 1월 1일 또는 사전에 정하여진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기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토지 또는 재산의 수용에 관한 관련 법규의 변경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싱가포르 대표의 성명]

[직위]

[날짜]

[싱가포르 대표의 성명]

[직위]

_____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월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싱가포르측 서한 본문)"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날짜]

[싱가포르 대표의 성명]

[직위]

_____ 귀하,

본인은 2005년 월 일 [장소]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위 협정에 기인하여, 본인은 협정 제10장(투자)과 관련하여 제10.12조제1항에 따라 제10.4조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회원국의 권리는 제2항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회원국은 제10.12조제2항의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4조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한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날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

김한수 국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월 일자 귀하의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서한 본문)"

본인은 우리 정부도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 양해가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싱가포르 대표의 성명]

[직위]